



Privacy-i

시장 1위
엔드포인트 내부정보유출방지
DLP 솔루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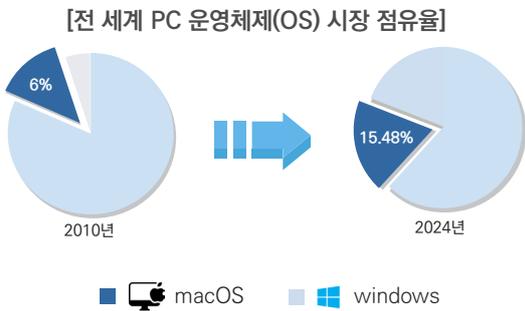


왜 소만사 Privacy-i 일까요?

1 하나의 에이전트로 6가지 기능 구현

내부정보유출방지(DLP)	개인정보 자산식별	엔드포인트 탐지대응(EDR)
안티바이러스(AV)	매체제어	취약점 점검(내PC지키미)

2 국내 유일 macOS 전용 에이전트 지원



- 전세계 macOS 시장 점유율 2010년 이후 **6% → 15.48%** 지속적으로 증가
 - 개발, 디자인 업무에서의 사용증가
 - 기존 DLP는 윈도우만 지원해서 차단하지 못함
- (출처 : "Operating System Market Share Worldwide", StatCounter)

3 개인정보 원본파일 모두 저장하여 사후감사자료 확보 미리보기 시 마스킹 처리하여 2차 유출 예방

- 유출된 개인정보 구분형태로 분류
- 포렌식 관점에서 유출데이터 구현
- USB, 출력물, 네트워크로 반출된 원본 파일 모두 로그 저장
- 미리보기 확인 시 마스킹 처리되어 관리자페이지를 통한 2차 유출 방지

파일 이름	백연 개수	위험도	파일 크기(KB)	암호화 종류	파일 생성 일시	파일 수정 일시	파일 분석
0.엑스트(유니코드big_endian).txt	1,216	105	59.16	일반	2024-11-04 13:22:17	2017-06-05 09:48:14	분석 전
주인 등록 번호	105						
외국인 등록 번호							
운전 면허 번호							
여권 번호							
개좌 번호							
신용 카드 번호	3						
핸드폰 번호	100						
전화 번호	96						
E-Mail 주소	100						
IP 주소	100						
법인 등록 번호	100						
사업자 등록 번호	105						
건강 보험증 번호	100						

4 개인정보 조치 구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법적처벌/소송예방

사례1 모 스포츠업체 220만 건 개인정보유출
과징금 75억원 부과

사례2 공무원이 흥신소에 개인정보
1천 여건 판매하여 직무해제 및 징계

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항 (과징금의 부과)
개인정보의 기술적 조치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
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3% 이하 과징금 부과

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2항 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
민감정보에 <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> 구축
미조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- PC와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 주기적인 점검 및 삭제
- 상용 웹메일로 개인정보파일 전송 시 차단 및 로그 저장
- 개인정보파일 암호화, 유출방지기능을 통해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 소송 위험 예방
- 빅데이터 검색엔진을 통한 '민감정보' 키워드 검색

외산대비 3배 개인정보 커버리지 확보
 3대 개인정보 유출 채널 완전통제
 3대 운영체제 에이전트 모두 지원

고용노동부, 서울특별시, 경기도교육청, 신한은행, 하나은행 등 1천여 고객사에서 선택한 솔루션입니다



아시아 유일,
 '가트너 매직 콰드런트'
 엔터프라이즈 DLP 분야
 2년 연속 등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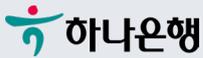
28년간 1천여 개의 기업에
 적용된 보안 기술을
 통해 인정 받은
 성능·안정성 보장



12만 유저
 개인정보보호
 및 유출방지



외산 Symantec 원백
 1만 유저



국내S사 E제품 원백
 1만5천 유저



1만 유저



3만 유저



1만 유저

01

USB, 외장하드 등
 보조저장매체 통한
 개인정보 유출차단

02

메일·메신저·클라우드
 네트워크 통한 개인정보
 유출 차단

07

보안담당자
 원격 검사 및 원격 암호화
 관리자 편의성 확보

03

출력물 통한
 개인정보유출차단
 출력기록저장, 워터마킹 등



06

1억건 데이터
 3분내 검색
 외산대비 1천배 빠른 검색

04

PC 내 개인정보검출
 삭제 및 암호화
 임직원 자가검출수행

05

구문분류형태로
 원본파일/유출내역
 상세로깅

Compliance

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[시행 2023.9.22]

조항	내용	법규준수가능
제6조 (접근통제)	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	· 맥OS, 리눅스, 윈도우 기반 PC에서 개인정보 검출→파기
제7조 (개인정보의 암호화)	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1. 주민등록번호 2. 여권번호 3. 운전면허번호 4. 외국인등록번호 5. 신용카드번호 6. 계좌번호 7. 생체인식정보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,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,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	· 맥OS, 리눅스, 윈도우 기반 PC에서 개인정보 검출→암호화 · 고유식별정보 포함파일 보유현황 파악 · 고유식별정보 외부반출 통제/기록

개인정보보호법 [시행 2024.3.15]

조항	내용	법규준수가능
24조의2 (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)	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	· 주민등록번호 포함 파일 보유현황 파악 · 주민등록번호 외부반출 통제/기록
32조 (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)	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파일명칭 운영근거/목적·개인정보 항목·처리방법·보유기간·제공받는 자 정보주체 수 등을 보호위에 등록	· 보호위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파일 운용 시 등록사항 기록
34조 (개인정보유출 통지·신고)	① 유출 인지 시 지체 없이 해당정보주체에게 통지 (유출된 개인정보항목, 유출시점, 경위 등)	· 개인정보 외부반출시 경로, 시점, 항목, 보내는 이, 원본파일 모두 저장
39조 (손해배상책임)	고의 or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시 ③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손해배상	·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, 유출방지기능을 통해 고시 준수 및 손해배상책임위험 사전예방
39조2 (법정손해배상)	고의 or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시 ① 300만원 이하 손해배상	
64조의2 (과징금 부과)	① 개인정보의 기술적, 관리적,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위반행위 전체 3%이하 과징금, 산정 곤란 시 20억 이하 과징금 부과	· 민감/고유식별정보 포함 파일암호화, 유출방지기능을 통해 고시 준수
74조의 2 (몰수 추정)	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에 <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>를 하지 아니하여 유출 시 위반행위로 취득한 금품 및 이익을 몰수	
75조 (과태료)	② 3천만원 이하 과태료 4. 처리목적이 완료,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 5. 민감, 고유식별,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8.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자	· 맥OS, 리눅스, 윈도우 기반 PC에서 개인정보 검출→암호화 ·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, 유출방지기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고시 준수



엔터프라이즈 DLP
Magic Quadrant 2년 연속 등재



DLP분야 10대기업
Vendor Landscape 등재



아시아 유일
엔드포인트DLP 4.5 Rating



CC인증



보안기능확인서



GS인증